

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. 5. 17 조례 제1189호
개정 2002. 5. 17 조례 제1278호
2005. 12. 22 조례 제1419호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 2021. 12. 23 조례 제280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2. 22, 2008. 6. 16, 2021. 12. 23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02. 5. 17, 2005. 12. 22, 2008. 6. 16, 2021. 12. 23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2. 5. 1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2. 22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3 조례 제2802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